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 4월 1일~3일 서류 접수, 7월 현장실사, 9월 중 지정 여부 의결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3월 20일(수)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는 매년 3월말까지 지정심사 일정·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3조에 따른 조치이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에 서류심사, 7월에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이상 → 지정
- ②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부적합' + 800점 이상·이하 → 미지정
- ③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미만 →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 ①번 경우에도 방통위는 필요시 조건 부가 가능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를 접하는 시작점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면서 “본인확인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1부. 끝.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책임자	과 장	고남현 (02-2110-1520)
		담당자	사무관	이상목 (02-2110-1521)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2024. 3.



방송통신위원회

1

개 요

□ 추진 배경

- 핀테크(전자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 지속 증대
-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선택권 확대,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추진

□ 주요 경과

-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 도입 '11. 4월
- 본인확인기관 지정 '11~'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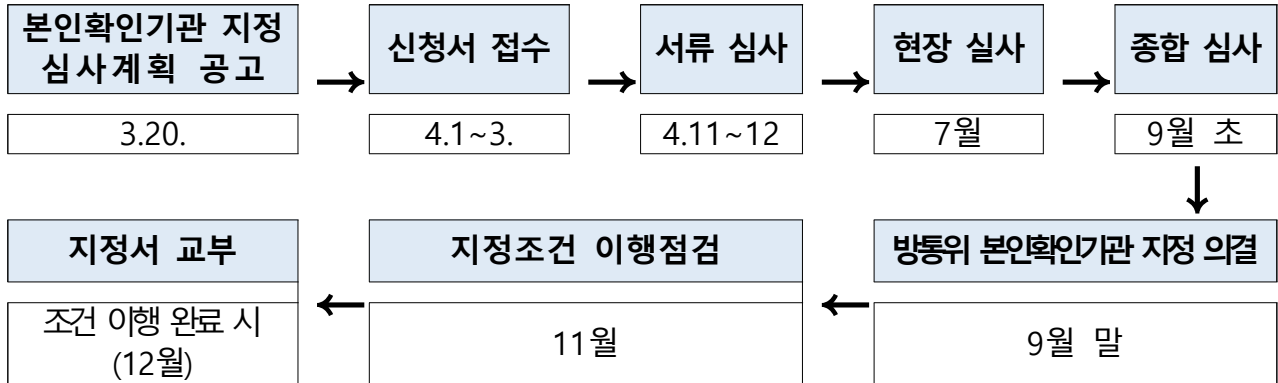
구분	기업명(총 24개)	지정연월
아이핀(3개)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11.9월
통신(3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12.12월
카드(7개)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농협은행	'17.12월 '18.12월
인증서(11개)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비바리퍼블리카 국민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20.10월 '20.12월 '21.8월 '22.6월 '23.12월

- '24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 '24. 3. 8.

2

심사 일정

□ 전체 일정(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현장실사 일정은 신청사업자 수에 따라 변경 가능

** 조건부 지정 시, 방통위의 조건 이행 점검 뒤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정서 교부

□ 신청서 접수

○ (접수일) 2024. 4. 1.(월) ~ 3.(수)

○ (제출서류) ①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서류 ④정관·규약 ⑤ 과거 3년간 주요 재무제표 및 재무수치 자료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서식 1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별표 2(작성요령)

< 제출 서류 부수 및 작성방식 >

①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 ⇒ 1부

② 사업계획서 ③ 증명서류 ④ 정관·규약 ⑤ 재무제표 등 ⇒ 원본 1부, 사본 10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1벌

※ 사업계획서 구성 : 사업계획서 요약문(25p 이내), 제1권(신청기관 명세, 조직, 재무), 제2권(보호조치 계획 및 설비규모)

- 제1권, 제2권 합쳐 200쪽 넘을 수 없으며, 필요시 부속서류 제출가능

○ (제출방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제출

- 담당자 : 이민재 주무관(02-2110-1523)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안)

-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15인 이내로 구성되며(세부사항 비공개),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 중 교체 가능

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
3. 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자격요건

□ 심사위원 직무

-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에 참여하며 중요 심사항목·계량평가 항목 '적합'/'부적합' 여부 판정 및 기타 심사항목별 점수평가 실시

4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 서류 심사

- 지정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에 명시된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 현장 실사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신청 기관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비·설비·관련 시스템 등 실사

※ 1社당 5일이 소요되며 기관별 현장 실사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종합 심사

- (청문) 심사위원이 지정신청 기관의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예 : 최고 정보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전반에 대해 질의·응답 실시
- (평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청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요 심사항목·계량평가 항목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정, 기타 심사항목별 점수평가 실시

5

심사항목 및 지정 기준

- (심사항목)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한 87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 (점수평가제) 87개 심사항목 중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에 대해 '적합' 평가를 받고,
 - 나머지 심사항목(64개)에 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조건 부과 가능)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부적합**' 시 총점과 상관없이 **미지정**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총점 **800점 미만**인 경우 **미지정(조건부 지정 가능)**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 >

심사사항	세부 심사기준	배점(점)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	90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	220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및 관리	160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	130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	80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시행	50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중요심사항목)*	적합/부적합
	접속정보의 위조·변조 방지	60
기술적·재정적 능력	본인확인업무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	60
	기술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적합/부적합
	재정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적합/부적합
설비규모의 적정성	이용자 개인정보를 검증·관리 및 보호 설비	20
	대체수단 생성·발급 및 관리 설비	20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 설비	40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30
	화재·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 설비	40
합계		1,000

방통위 의결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대상 기관에 대한 본인확인 기관 지정 여부 의결(필요 시 조건 부과)

 지정서 교부

- (조건이 부가된 경우) 지정대상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고, 방통위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 교부
-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경우) 방통위가 지정대상 기관에 지정서 교부